

2023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 구리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5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구 리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 접수기간 : 2023. 3. 2.(목) ~ 12. 1.(금)
- 사업예산 : 49,500천원(15대)
 -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사용본거지가 구리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지원내역 : 장치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지원
 - 자부담금 : 차량 소유자는 장치 부착 비용의 약 10%의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단, 자부담금 면제대상 차량은 제외)
- 지원금액 ※ 현재 환경부 단가산정중으로, 지원금액은 추후 공고

<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금액 >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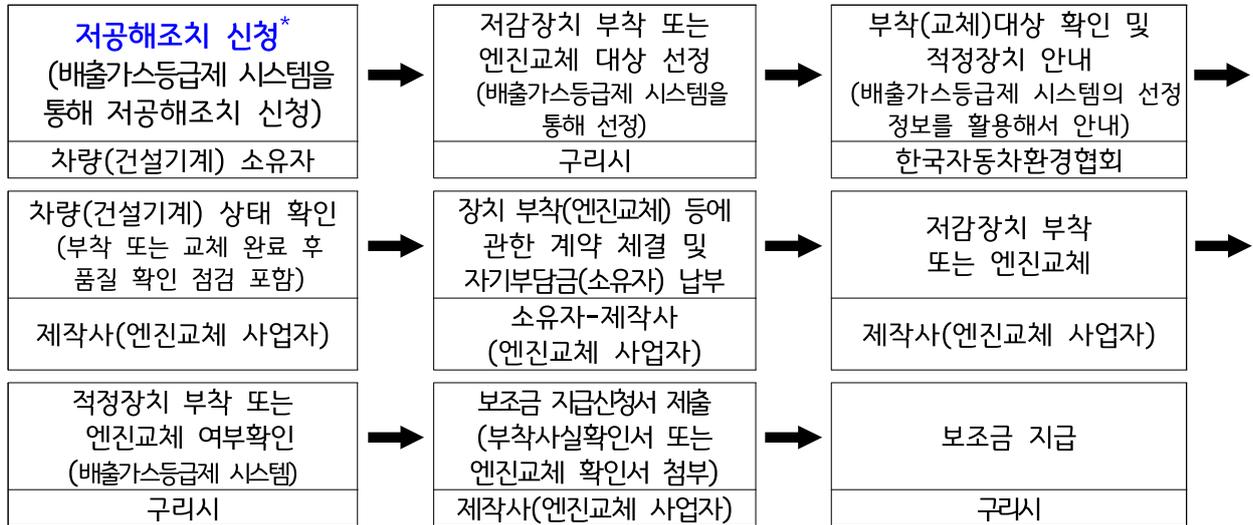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단가산정 후 통보 예정			
	자연중형				
	자연소형				
	복합대형				
	복합중형				
	복합소형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2.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는 아래 절차에 따라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여야함 [등급제 사이트(<https://mecar.or.kr>)]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절차 >



* (사이트 주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 장착불가(4륜구동 등)나 장치 미개발 차량은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장착이 불가할 수 있음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은 **향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을 준수하여야 하고, 차량 말소 시 장치를 반납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 보조금 회수 기준 : 의무운행기간 이내에 수출·폐차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름](#))
- 탈거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 회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사고(교통사고 포함), 도난 및 천재지변, 저감장치와 관련이 없는 차량의 고장 등
 - ※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급)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 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차량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에 따라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3.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3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이 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45~7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4. 문의처

- 구리시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031-550-2329)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및 PM-NOx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No	제작사	연락처	복합				자연			
			소형	중형	대형	PM-NOx	소형	중형	대형	PM-NOx
1	세라컴	02-744-1777	○	○	○	-	-	-	-	○
2	HK-MnS	1588-7657	○	○	○	-	-	-	-	-
3	에코닉스	1666-3243	○	○	○	○	-	-	-	-
4	에코앤드림	1644-2402	○	○	○	-	-	-	○	○
5	일진하이솔루스	1588-7558 031-220-0839	○	○	○	-	-	○	○	○
6	크린어스	1577-9014	○	○	○	○	-	-	-	○
7	화이버텍	1588-7617	○	○	-	-	-	-	-	-
8	후지노테크	031-654-2031	-	○	-	-	-	-	-	-
9	에코마스터	1533-1612	-	-	-	-	○	-	-	-

< 별첨 1 > 부정수급 제재 주요 규정 1부. 끝.

< 별첨 1 >

부정수급 제재 주요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1.1.12 제정, '21.7.13 시행)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주요 제재 규정을 안내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